

보도시점 2024. 12. 27.(금) 배포 즉시

계도기간 종료로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2.27.(금) 한국경제(온라인), 내년부터 30인 미만도 주52시간제, 기업이든 근로자든 누가 버티겠나

2. 설명 내용

- 30인 미만 기업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'23.1.1.부터 2년간 부여한 계도기간은 그 기간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, 근로감독 등으로 법위반 적발 시 추가적인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임
 - * 사법처리를 유예하는 것이 아닌 진정, 수사·정기감독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 부여(미적용 기업의 경우 최대 4개월)함
- 다만, 정부는 일부 기업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
 - '25.1.1.~'25.6.30.까지 처리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 사정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해 최대 6개월(3+3개월)의 시정기간이 부여됨
 - 이에 더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,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(컨설팅) 강화,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가진단표 배포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
 - 또한 업무량 폭증, 돌발상황 등의 사유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(주 12시간 추가)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임

담당 부서	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진선 (044-202-7991)
		담당자	서기관	김지은 (044-202-7982)